

충청북도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

# 심 사 보 고

2004.7.20.(화)  
기획행정위원회

## 1. 심사경과

가. 제출자 : 충청북도지사

나. 제출 및 회부일자

- 제출일자 : 2004년 7월 5일
- 회부일자 : 2004년 7월 5일

다. 상정일자 : 제230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

- 2004. 7. 14 :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,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,  
심사의결

## 2. 제안설명 요지

(제안설명자 : 자치행정국장 김 재 욱)

가. 제안이유

-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개정(법률 제7100호, 2004. 1. 20)으로 화물자동차운수사업허가·주선사업허가 등 도지사 권한의 사무가 건설교통부장관 권한의 사무로 변경되고
- 자가용화물자동차 사용신고 등 시장·군수 권한의 사무가 도지사 권한의 사무로 변경됨에 따라 수수료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.

## 나. 주요골자

- 화물자동차운수사업허가·주선허가 등 12개 사무 삭제  
자가용화물자동차사용신고 등 관련 수수료 신설
- 사용(신규·변경) 신고 : 1건당 1,400원
- 유상운송허가 또는 임대허가 신청 : 1건당 1,400원

## 3. 검토보고 요지

(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이 상 만)

- 충청북도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검토한 바  
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의 개정으로 화물자동차운송사업 및 화물  
자동차운송주선사업이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전환되어 건설교통  
부장관의 권한으로, 자가용화물자동차의 사용신고 및 유상운송  
허가신청 또는 임대허가신청 사무가 시장·군수 권한에서 도지  
사 권한 사무로 변경됨에 따라 수수료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 
것으로서 타당하다고 사료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“생 략”

5. 토 론 요 지 : “생 략”

6. 심 사 결 과 : 원안가결

7. 소수 의견 요지 : “없 음”

8. 기타 필요한 사항 : “없 음”

## 9. 심사보고서 첨부서류

- 충청북도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

## 충청북도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

충청북도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별표 2의 제2호 인가, 허가, 신고, 신청, 등록 시설확인 등 자목 교통관계 소관 (1) 내지 (12)를 삭제하고, (1) 내지 (2)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구 분	기준	요액
2. 인가, 허가, 신고, 신청, 등록 시설확인 등		
자. 교통관계		
(1)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38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자가용화물자동차사용(신규·변경)신고	1대	1,400원
(2)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39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자가용화물자동차유상운송 허가신청 또는 임대허가신청	1대	1,400원

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 신 구조문대비표

[별표 2]

## 제증명등수수료요율표

(단위 : 원)

현행			개정(안)		
구분	기준	요액	구분	기준	요액
2. 인가, 허가, 신고, 신청, 등록, 시설확인 등			2. 인가, 허가, 신고, 신청, 등록, 시설확인 등		
자. 교통관계			자. 교통관계		
(1)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등록신청	1건	14,000(기본금액에 차량 1대당 2,000원씩 추가합산)	<삭 제>		
(2)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변경등록신청	1건	5,000(기본금액에 차량 1대당 2,000원씩 추가합산)	<삭 제>		
(3)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등록사항변경신고	1건	2,000	<삭 제>		
(4) 화물자동차운송사업영업소등록신청	1건	14,000(기본금액에 차량 1대당 2,000원씩 추가합산)	<삭 제>		
(5)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운송약관 또는 운송주선약관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	1건	2,000	<삭 제>		
(6) 화물자동차운송사업(운송주선사업)의 양도·양수 또는 법인합병신고(동법 제14조 및 제24조)	1건	3,000	<삭 제>		

현 행			개 정 (안)		
구 분	기준	요액	구 분	기준	요액
(7) 화물자동차운수사업(운송주선사업)의 상속신고	1건	3,000	<삭 제>		
(8) 화물자동차운수사업(운송주선사업)의 휴지·폐지신고	1건	1,400	<삭 제>		
(9)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의 등록신청	1건	16,000	<삭 제>		
(10)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의 등록사항변경신고	1건	1,400	<삭 제>		
(11)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의 영업소설치신고	1건	14,000	<삭 제>		
(12) 자가용화물자동차 유상운송허가 또는 임대허가	1대	1,400	<삭 제>		
<신 설>			(1)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38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자가용화물자동차사용(신규·변경)신고	1대	1,400
<신 설>			(2)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39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자가용화물자동차유상운송허가신청 또는 임대허가신청	1대	1,400

## 관련법령 발췌

### 【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(법률 제7100호, 2004. 1. 20)】

第38條 (自家用貨物自動車使用申告) ①화물자동차운송사업 및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에 이용되지 아니하고 自家用으로 사용되는 貨物自動車(이하 "自家用貨物自動車"라 한다)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貨物自動車を 사용하고자 하는 者는 建設交通部令이 정하는 사항을 시·도지사에게 申告하여야 한다. 申告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. [개정 2004.1.20]

第39條 (有償運送의 금지) 自家用貨物自動車の 所有者 또는 使用者는 自家用貨物自動車を 有償(당해 自動車의 運行에 필요한 경비를 포함한다)으로 貨物運送用에 제공하거나 賃貸하여서는 아니된다. 다만, 建設交通部令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로서 시·도지사의 許可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 [개정 2004.1.20]

第47條 (手數料) ①이 法の 規定에 의하여 허가·인가 등을 申請하거나 申告를 하고자 하는 者는 建設교통부령 및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手數料를 납부하여야 한다. 다만, 第46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權限이 委託된 경우에는 당해 受託機關이 정하는 手數料를 해당 受託機關에 납부하여야 한다. [개정 2004.1.20]